

#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635
------	-----

2023.07.04.  
기획경제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3월 29일, 왕정순 의원(찬성자 14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
다. 상정결과 :

####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】

-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7.4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왕정순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통해 여성기업의 활성화에 노력해 왔으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사항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해

적극적인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.

-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여성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,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시책 추진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포상 규정을 신설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여성기업에 차별적 관행 및 시정 개선에 대해 명확히 함(안 제5조).
- 여성기업 우대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함(안 제9조).
-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 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.
-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함(안 제13조)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사항 이행계획 제출 기간을 구체화하고,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확히 하며,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여성기업 관련 시책 이행 여부를 반영하여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됨.

#### 나. 서울시 여성기업지원 사업 현황

- 정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「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여성기업법”)을 제정(1999.6.1.)하여 여성기업에 불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고,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「여성기업법」을 근거로 ▶종합계획 수립·시행, ▶창업 교육, ▶인력 및 신제품 개발, 신기술·정보 제공, 경영지도, ▶판매 촉진, ▶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, ▶비대면 역량강화, ▶디지털 역량강화, ▶여성경제인단체 지원, ▶홍보 및 인식개선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(2017.1.5.).

## <여성기업 관련 주요사업 내역>

사업명	사업내용	소관부서
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	예비·초기창업 지원(북·남·동부)	양성평등담당관
여성창업플라자 운영	공예·디자인 업종 예비·초기창업 지원	
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	공예 업종 예비창업 지원	
여성기업 입주 가산점 부여	서울시 창업보육기관* 입주심사시 가산점 부여	창업정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
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	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(5억원 이내, 이차보전 2.5%)	소상공인담당관
여성기업 관련 단체 지원	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 보조금 지급(2억원)	경제정책과
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	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및 홍보(법정의무비율 이상)	
여성기업과의 소통 창구 운영	여성기업지원위원회 개최	

\* 서울창업디딤터, 서울창업성장센터, DMC 첨단산업센터 및 산학협력연구센터, 게임콘텐츠센터

- 개정안은 「여성기업법」에 규정된 ▶시정사항 이행계획, ▶자금지원 우대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추가하고, 여성기업지원 사업의 위탁 근거, 수의계약 한도금액 상향, 공공기관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됨.

### 다. 주요 개정사항

#### (1) 시정사항 이행계획 제출기간 구체화(안 제5조)

-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대해 시정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9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고, 시정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며, 시정요청과 이행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추가함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차별적 관행의 시정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.  <신 설>	제5조(차별적 관행의 시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 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- 이는 종전에 시정요청의 근거만을 규정하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(2019.4.23.)된 「여성기업법」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관계 법률과의 통일성·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음.

**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**

제4조(차별적 관행의 시정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공공기관등”이라 한다)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,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중소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,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- 다만, 시정요청사항과 그에 따른 이행계획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5조(차별적 관행의 시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 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	제5조(차별적 관행의 시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90일 이내에 그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 (개정안과 같음)

(2)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사항 신설 등(안 제9조)

-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,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등을 신청할 경우에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제1항)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여성기업에 대한 지원) <신 설>  ① ~ ② (생략)	제9조(여성기업에 대한 지원)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. 1.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 2.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.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 ② ~ ④ (생략)

- 「여성기업법」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,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제도를 수립·운영하도록 함(제10조).

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자금지원 우대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 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-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함.
- 또한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목적을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에서 여성기업 활성화로 확대하고(제2항), 지원사업의 위탁근거를 신설함(제3항).

현 행	개 정 안
<p>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</li> <li>2.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, 신기술·정보의 제공,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</li> <li>3.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</li> <li>4.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</li> <li>5.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·유통·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</li> <li>6.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</li> <li>7.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</li> <li>8.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</li> <li>9. 그 밖에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</li> </ol> <p>&lt;신 설&gt;</p>	<p>② -----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9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

- 여성기업 지원사업은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, 비대면 방식을 통한 역량강화, 디지털 역량강화, 홍보 및 인식개선 등으로 확대된 바, 사업목적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에 한정하기 보다는 여성기업 활성화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교육·홍보 등의 여성기업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여성경제인협회<sup>1)</sup> 등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식일 수 있음.
- 한편, 개정안은 서울시와 계약하는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액을 1억원으로 확대함(제4항).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1억원 ----- -----.</p>

-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업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고자 지방계약법령의 수의계약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여성·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액을 종전의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함(2020.5.).[참고자료]

1)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이며 여성경제인 양성,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, 창업 지원 및 촉진,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,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 투자유치,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함.



- 이후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2022.9.20.)되면서 확대된 수의계약 한도액 규정이 명문화되었고 이를 개정안을 통해 반영하게 됨.

(3) 여성기업 시책 추진사항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(안 제10조)

-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 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0조(공공기관의 평가 반영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,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.

- 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여성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.
- 현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정부(행정안전부)에서 수행하므로 서울시는 자체평가권을 가진 출자·출연기관만을 대상으로 함.
- 서울시의 출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에는 장애인, 중증장애인, 소기업·소상공인,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가산점만 부여

하고 있으므로[참고자료2],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지표에 추가할 필요성은 인정됨.

(4) 포상(안 제14조)

- 개정안은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함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3조(포상)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.
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음.
- 그러나 포상근거를 개별조례에 명시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상 규정의 신설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라. 종합의견

- 개정안은 「여성기업법」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사항, 시책 추진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음.

- 다만, 수의계약 추진시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 등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사실상 여성기업을 위한 우대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재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왕정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3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  
발 의 자: 왕정순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 경, 김규남, 김성준,  
김지향, 남창진, 유정인,  
이숙자, 이영실, 이원형,  
임규호, 임종국, 정준호,  
최민규, 한 신 의원(14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통해 여성기업의 활성화에 노력해 왔으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사항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해 적극적인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.
-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여성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,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시책 추진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포상 규정을 신설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여성기업에 차별적 관행 및 시정 개선에 대해 명확히 함(안 제5조).
- 나. 여성기업 우대 및 지원사업 구체화함(안 제9조).
- 다.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 시책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.
- 라.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(안 제13조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

##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”를 “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5천만원”을 “1억원”으로 한다.

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
  2.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
  3.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
-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1조, 제12조 및 제14조로 하고, 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공공기관의 평가 반영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,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)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(차별적 관행의 시정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조(차별적 관행의 시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(여성기업에 대한 지원)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</p>	<p>제9조(여성기업에 대한 지원)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</li> <li>2.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</li> <li>3.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</li> </ol> <p>② ----- 여성기업 활성화를</p>

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②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10조·제11조 (생략)

<신설>

제12조 (생략)

위하여 필요한 경우 -----  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-----  
-----  
----- 1억원 -  
-----  
-----.

제10조(공공기관의 평가 반영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,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1조·제12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

제13조(포상)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.

제14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